

의안 번호	제3610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(재의요구의 건)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5월 12일 김포시장
- 나. 상 정 일 자 : 2025년 7월 23일
- 다. 의 결 일 자 : 2025년 7월 23일

2. 재의요구 이유

- 상위법인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충전시설 화재예방·대응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, 이에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정 요구가 있으나, 소관부처(산업통상자원부)에서는 충전시설의 화재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하는 것이 법적 통일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관련 개정안들이 계류 중인 상황임.
- 화재예방과 안전분야는 높은 전문성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요구하는 업무로,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관리가 필요하고 소방 관련 업무체계와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·조직이 필수적임에 따라, 「지방자치법」[별표1] ‘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’에서도 산하 소방조직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(시·도)의 사무로 구분하고 있음.
- 기초지자체인 김포시는 소방분야 인력·조직이 부재할뿐만 아니라, 현재 정부에서도 전기자동차 화재의 특수성(열폭주 등)에 대한 대책을 고안 중임에도 뚜렷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포시에서 화재 관련 시책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.

- 한편, 충전시설 화재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해 9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「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」을 발표한 데 이어, 최근 소방청의 「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」이 마련된 바 있음. 이처럼, 국가·광역차원의 정책 및 체계가 정비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
3. 주요내용 : 생략

4. 검토의견 : 생략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**부결**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10. 주문사항 : 없음

11. 결과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